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안내 협조 요청

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2019.12.25.시행)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3. 시·도, 한국환경공단 및 유관 협회 등에서는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대상으로 널리 안내하시어 연장된 기간 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공고(6.12.관보게재 예정)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생활환경과장), 부산광역시(기후대기과장), 대구광역시(환경정책과장), 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장),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기후환경정책과장),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장), 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 충청남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석면조사기관협의회, (사)한국석면감리협회

주무관	노현진	행정사무관	신행수	기술서기관	이진원	과장	전결 2020. 06. 08.
							신건일

협조자

시행 환경피해구제과-980 (2020. 06. 08.) 접수 M00000863751 (2020. 6. 9.)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814 팩스번호 044-201-6823 / nogal99@korea.kr / 대국민공개